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종길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
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
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임춘대, 채수지, 최민규,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어,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.
- 최근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, 현재와 같이 별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임.
- 이에 시행예정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문 일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노후도 요건(57%)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(50%)을 따르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라 관리지역 내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예정(노후도 요건 50%)에 따라 기존 노후도(57%)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계분석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